

1999년도 공정위 사건처리결과 종합분석·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 12월 21일, 19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공정위는 '99년도에 총 2,013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약관 및 부당한 공동행위가 증가한 반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대규모의 직권서면실태조사와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도 사건처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리 개요

'99년도에는 신고 등의 사건 2,333건(전년 이월 541건, 신고 1,363건, 직권조사 429건)중 2,013건을 처리하였다.

■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1.1~12.15)
사건착수	1,242	1,945	1,861	2,321	1,792
신고사건	818	1,476	1,539	1,819	1,363
직권조사	424	469	322	502	429
사건처리 ¹⁾	1,115	1,536	2,154	2,127	2,013
미결	231	640	347	530	309

주1) 사건처리건수는 당해 연도 사건착수건수와 전년도 미결건수의 합계에서 금년도 미결건수를 차감한 건수

이 중 부당내부거래(103.4% 증가), 불공정약관(63.9% 증가), 부당표시·광고(62.2% 증가), 부당공동행위(53.3% 증가)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불공정하도급(△45.0%) 사건은 올해 조사방식 전환(대규모 서면직권실태조사),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역별로는 시정명령 592건(전체의 29.4%), 시정권고 146건(7.3%), 경고 462건(23.0%), 재결(이의신청) 168건(8.3%), 고발 11건 등이며, 과징금은 89건(218개사) 총 1,516억원(건당 평



군 17억원) 부과하였는데 '99년도 과징금 부과액은 연간규모로는 사상 최대로서 이전 해까지 부과액 누계('91~'98 : 1,683억원)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부당내부거래행위(22건, 1,008억원), 부당공동행위(15건, 440억원)가 전체의 95.5%를 차지하였다.

■ 법 위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및 조치 내역 ■

(단위 : 건)

구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99년도 조치내역							미결
	'98	'99 (1.1~12.15)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권고	경고 ²⁾	무혐의	기타	재결	
독과점규제위반 ¹⁾	62	60		6(4)		34	5	9	6	8
부당공동행위	77	115		32(15)			29	3	51	19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32	127	1	80(8)		10	16	10	10	29
불공정거래행위	547	435		92(18)		54	177	78	33	69
부당표시·광고행위	267	433		232(18)		93	45	44	19	81
부당내부거래행위	29	59		23(22)			5	2	29	7
불공정약관	183	300	3	96	146		31	26		34
불공정하도급행위	824	453	1	31(4)		260	41	98	18	58
기 타	6	31	6			11	2	10	2	4
계	2,127	2,013	11	592(89)	146	462	351	280	168	309

주1) '독과점규제위반'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제한, 경제력집중억제 등이 포함
 주2) '경고'에는 조정이 포함, '기타'는 조사중지, 종결처리, 심의절차 종료 등임

■ 법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유형별	1998		1999(1.1~12.15)		증감율 ¹⁾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독과점규제위반	11	5,498	4	1,760	△68.0%
부당공동행위	19	31,991	15	44,026	37.6%
사업자단체금지행위	4	908	8	165	△81.8%
불공정거래행위	15	5,630	18	2,648	△53.0%
부당표시·광고행위	2	84	18	2,161	2,472.6%
부당내부거래행위	12	91,882	22	100,806	9.7%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4	63	4	88	39.7%
계	67	136,056	89	151,655	11.5%

주1) 증감율은 '98년 과징금액 대비 '99년 과징금액의 증감 비율임

II. 사건 유형별 주요내용과 특징

1. 부당내부거래행위

□ 5대 그룹에 대한 3차 조사('99. 5)

총 123조원의 대규모 지원성거래('98년 1·2차 조사 : 5.5조원)를 적발하여 삼성 349억원, 현대 237억원, 대우 1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 총 789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투신 등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여 계열사 지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유형이 적발되었으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교차지원, 우회지원 등 새로운 유형을 적발하였으며, 공정거래법 8차 개정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하며, 투신업·보험업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매출액의 2%→5%)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사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

(단위 : 억원)

시기별	구분	조사대상업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
1차('98. 5)		18개사	40,263	2,244	704
2차('98. 7)		40개사	14,927	546	209
3차('99. 5)		45개사	123,327	2,500	789
계		103개사	178,517	5,290	1,702

* 6대 이하 그룹 조사 결과('98년) : 지원성거래 24,837억원, 과징금 141억원

□ 공공사업자에 대한 조사('99. 4)

총 3,933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 한국전력 28억원, 한국통신 7억원, 가스공사 7억원, 주택공사 5억원, 농산물유통공사 2억원, 도로공사 및 토지공사 각각 1억원 등 52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공공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시 타회사에 비해 높은 금액(약 15%)으로 계약하고 자회사에게 과도한 선급금 지급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며 자회사에게 인력을 지원하고도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조사('99. 11. 2~12. 4)

현대, 삼성 등 8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등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완료하여 올 1월중 조치하였다.

2. 부당공동행위 등 경쟁제한행위

□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온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대한 조사 결과 대규모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낙찰업체가 콜레터(Call Letter) 배부 등을 통해 연고권을 주장하고, 업체간 자율조정을 통해 여타 업체들은 연고권 주장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96%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21공구)」 등 3개 공사 입찰담합건에 대해, 26개 업체에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99. 2), 들러리업체는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하고, 입찰가격 산출도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낙찰에 협조한 「동해-주문진간 4차로 확장공사」 등 2개 공사 입찰담합건에 대해, 2개 업체에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99. 8)하였다.

독과점 구조가 장기화되어온 에어컨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8개 업체 및 사업자단체가 입찰, 재판매가격, 판매마진 등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삼성전자 114억원, LG전자 113억원, 대우캐리어 9.4억원, 만도기계 9.5억원, 센추리 9.5억원, 범양냉방 4.2억원, 대우전자 1.8억원 등 총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99. 10).

맥주 3사가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출고가격 인상을 협의·결정하여 담합인상한데 대하여 총 11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99. 8).

신용카드 수수료 담합 등 공공건설분야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과 상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여 공공건설분야에 고착화된 입찰담합 관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국가예산 낭비의 방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조달청공사 낙찰률(%) : '97(87.28), '98(81.78), '99.1~8(74.20)

□ 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

'99년 들어 15개 대형백화점과 12개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 실시('99. 2월, 6월)하여 11개 대형백화점의 입점·납품업체에 경품·광고비용 부당전가, 관측사원 파견 강요, 부당반품 등 법위반행위를 적발,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99년 1월부터 할인특매고시 폐지, 경품고시의 완화 등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유통업체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업체와 납품업체간에 적용되는 '표준거래약정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도 조사하였는데,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배부와 제시, 매도 및 반환신고 수리업무를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를 빌미로 가입을 강제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범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였고('99. 11), 법무사로서의 등록과 공제회의 가입이 연계되도록 각각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가입비를 받기로 의결한 대한법무사협회 등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다('99. 11).

□ 기업결합 심사

'99년 기업결합건수는 580건('98년 486건)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에 비해 다른 업종간의 혼합결합 비중이 증가, 수평·수직결합은 감소하고 정보통신분야는 증가(42건→62건), 화학업종은 감소(75건→44건)하였으며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비중이 전체의 29.1% 차지하였다('98년 27.2%).

기업결합 심사결과 시정명령 2건(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 건, OB맥주의 진로쿠어스 인수 건), 경고 13건, 예외인정 1건(한진·대우중공업, 현대정공의 통합철도차량 설립 건)으로 조치하였다.

□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조사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버스 부문에 있어 수출가격 등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을 3~11%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11.4억원 과징금 부과하였다('99. 8).

3. 부당표시·광고행위 및 불공정약관

□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

IMF 이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금년 들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대규모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다.

유사금융기관인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중 1차로 122개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100% 원금보장, 여신전문금융회사, 확정배당율 보장 등 허위·과장표시를 한 16개사에 총 10.7억원 과

징금 부과하였다('99. 4).

전국 유명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중국산 마사·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수의를 마치 전통삼베(안동포, 순창포 등)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폭리를 취한 8개 수의판매업자의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99. 9).

구매 유인효과가 커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다이어트 운동기구 업체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99. 9).

이동통신업계의 각종매체를 통한 무료통화 기간 제한, 사용시간대 미표시 등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99. 9).

공정위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등의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약관 및 신종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강화하였다.

일반이용자가 잘 모르는 금융분야, 전문서비스업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하였다('99. 5).

납입한 가맹금을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부자재의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인테리어 설비공사를 사업자가 지정하는 조항, 가맹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 최근 창업이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치킨 11개, 피자 8개, 햄버거 6개 등 56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99. 5).

새로운 업종인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약관,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 입주계약서상 불공정약관 등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99. 6).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행업, 아파트분양, 병원이용, 콘도미니엄 등 11개 분야를 보급, 앞으로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에 대한 보급도 추진중이다.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금년부터 처음으로 대대적인 서면직권실태조사 실시

원사업자 1,000개, 수급사업자 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결과, 범위반 혐의가 있는 62개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99. 10. 27~12. 7)하고, 731개사에 대해 시정지도중이며 조사기간중 미지급대금의 자진지급 등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 가시화로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2000년 2만개, 2003년부터 원사업자(약 2만3천개)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 예정이다.

□ 불공정 하도급사건에 대하여 엄중조치

금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31건(이중 4건은 102백만원 과징금 부과), 경고 260건 등의 시정조치하였다.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였다가 납품대금에서 공제, 납품단가에서 해당 어음할인료만큼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 임의로 발주취소 등 풍성전기(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99. 4).

미지급대금 308백만원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불이행한 라성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미지급대금 57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37백만원 및 어음할인료 40백만원, 합계 77백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조사과정중에 지급완료한 삼환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와 함께 4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99. 8).

'99년도 주요 조사 사건

	과징금액(업체수)
• 5대 그룹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99. 5)	: 789억원(45개사)
•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관련 에어컨업체 조사('99. 8)	: 266억원(8개사)
• 5개 건설공사 입찰 부당공동행위 조사	: 155억원(28개사)
-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21공구)」등 3개('99. 2)	: 101억원(26개사)
-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4차로확장공사」등 2개('99. 8)	: 54억원(2개사)
• 공공사업자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99. 4)	: 52억원(13개사)
•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력남용 조사('99. 8)	: 11.4억원(2개사)
• 맥주 3사의 출고가격 부당공동행위 조사('99. 8)	: 11억원(3개사)
• 파이낸스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조사('99. 4)	: 10.7억원(16개사)
계	: 1,295.1억원(115개사)